제3장

1. 외국인등록 신규

<u>●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「외국인등록」을 해야 한다.</u>

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 없다.

일본 입국

90 입 일 국 이 후 내

외국인등록신청 거주지역의 구청• 시청에서 등록한다.

> 2~3주 후 발행

외국인등록증발행 →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휴대 ★등록장소: 거주 지역의 구청·시청

★외국인등록에 필요한 것:

①여권

②사진 2 매

(가로 4.5×세로 3.5cm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
◆주의: 신청할 때는 본국의 주소(한자),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둘 것. 신청중에 귀국하는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후에 귀국할 것.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편물 수취도 불가능하므로 주의!

★유효기간

5년간 유효: 재류자격이 취학•유학으로, 1년 이상 재류하는 경우

5년 이후→외국인등록증 갱신

★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···

- •외출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여 야 한다.
- ·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는 반드시 수첩 등에 적어 둔다.

토막 상식!

(al wil)

조세조약에 의한 과세 특례란?

유학생의 경우 신고를 하면,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. 자세한 내용은「国税庁」홈페이지「税務手続 きの案内」→「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」를 참고.



외국인등록 변경

외국인등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?

- ★주소가 변경되었을 때
- ★일본어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여, 재류자격이「취학」에서「유학」으로 변경되었을 때
- ★재류기간을 갱신하였을 때
- ★여권번호, 여권발행일이 변경되었을 때 등

「외국인등록증」의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



등록한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등록변경을 해야 한다.

(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)

등록 갱신에 필요한 것

①외국인등록증 ②여권

(재류기간의 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의 경우)

◆참고:이사로 인한 변경등록은 새로운 거주지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게 되므로, 이전 주소지의 구청 · 시청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.

토막상식!

이사한 경우,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이전신고 엽서를 받아 기입한 후에 창구에 제출한다. 그러면 접수 후 1 년간은, 이전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도 새 주소지로 다시 배달해 준다.



3. 외국인등록 확인

5년에 한번, 외국인등록을 확인해야 한다.

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「기준일」로부터 30 일 이내에 구청·시청에서 등록을 확인한다.

등록 확인에 필요한 것

① 여권 ②외국인등록증 ③사진 2 매

4. 외국인등록증의 반납

●외국인등록증은 언제 반납하나?

★일본의 학교를 졸업하고, 본국으로 돌아갈 때



★일본 이외의 국가로 유학 갈 때



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.

★반납 수속 장소: 출국하는 일본의 공항 또는 항구



◆만일, 이 때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면?

「외국인등록증 미휴대」로 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, 외국인등록증을 잊지 않고 반납하도록 하자.

●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란?

「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」란, 외국인등록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것. 외국인은 주민표가 없기 때문에,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며, 각종 수속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.

신청에는 **인감(가지고 있는 경우), 신분증명서** (외국인등록증 등) 가 필요하다.



5. 외국인등록증을 분실 했을때

●「분실신고」나「도난신고」를 한다.

거주지역,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한 지역의 경찰서·파출소에 간다.





「**분실신고**」나 「**도난신고**」를 한다.

◆주의:이 수속은 반드시 경찰서·파출소에 가서, 정해진 서류에 기입하여야 한다.

전화접수는 받지 않는다.

또한 외국인등록증 뿐만 아니라, 여권이나 지갑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도 절차는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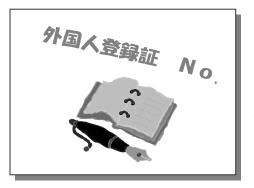
●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,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한다.

외국인등록을 한 구청·시청에 가서 사정을 설명한 후,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다.

★재발급 수속에 필요한 것

① 여권

② 사진 2 매 (가로 4.5×세로 3.5)



재발급 수속을 할 때 **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**를 알고 있으면 수속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.

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, **외국인등록증의** 등록번호는 반드시 수첩 등에 적어 두도록 한다.



6. 국민건강보험이란

외국인등록



국민건강보험에 가입

병이 났을 때,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.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, 일본에 1 년 이상 재류하는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「국민건강보험」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.

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, 병이 났을 때 거액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.

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질병에 대비하고 있다.

유학생활에서 건강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 것이다.

【유학생 (「유학」재류자격 소지자) 의 건강보험・의료비보조제도】

★국민건강보험

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, 의료비 총액의 30%를 지불. 예: 의료비 총액이 10,000 엔인 경우





★외국인유학생 의료비보조제도

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(JASSO)가 위에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△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유학생의 경우: 자기부담액의 35%보조 △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유학생의 경우: 자기부담액의 70%보조

예: 위의 경우, 유학생이 부담한 3,000엔의 35% (70%) 가 보조되며, 국민건강보험과 병용하면, 유학생의 실질적인 자기부담액은 총 의료비의 20%(30%)가 된다. 자기부담액을 일단 병원에 지불하면, 「의료비보조제도」에서 보조되는 의료비는 나중에 돌아온다.

★대학의 의료보험제도 (일부대학)

대학에서는, 학내에 독자적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곳이 많다. 대학의 유학생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자.



♪ 상기의 제도를 지원 받으려면?

①재류자격이 「유학」일 것 ②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을 것 ③보험증을 보험의료기관에 가지고 갈 것 ④보험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 ⑤「외국인유학생 진료비보조 신청서 (JASSO 지정 서류. 각 학교에 비치)」를 재학 중인 학교의 유학생 담당부서에 제출할 것.



7. 국민건강보험 가입방법과 비용

●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어디에서?

외국인등록을 한 구청·시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서 가입한다. 입국 후 빠른 시일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이 늦어지면, 지나간 달의 보험료 까지 청구될 수도 있으니, 일본에 입국한 뒤 곧바로 가입하도록 하자.



●가입신청에 필요한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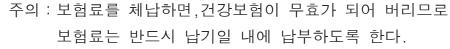


- ★재류자격이 「유학」인 학생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.
- ★재류자격이 「취학」인 학생 외국인등록증 이외에, 기관에 따라 「재류기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」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.

●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얼마?

- ★도쿄 23 구의 경우, 주민세 (도민세·구민세) 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한달에 약 2,500 엔(2004년도).
- ★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(소득이 없는 경우라도) , 가까운 시청(구청)의 창구에 가서 반드시「소득 신고」를 하도록 하자.

소득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보험료감면제도에 의해 보험료가 70%~50%까지 감액된다.





●이사한 경우에는?



새로운 주소지의 구청·시청에 가서,이전의 국민건강 보험증을 제출하고 새 보험증을 발급받는다.

●귀국할 때에는?

반드시 가입 (혹은 변경) 한 창구에 가서,국민건강 보험 해지수속을 한다.



8. 병이 났을 때

병원의 종류

- ★국립•도립 종합병원
- ★사립 종합병원
- ★국립•사립대학 부속병원
- ★개인병원





●진료시간

각 병원의 정해진 진료시간 외에 진료를 받으면, 요금이 가산되어 영수증이 발행 되지 않는 경우가있다.

반드시 국민건강보험증을 **소지하고**, 병원에 간다.

◆참고 : 응급 상황인 경우

갑자기 병이 났을 경우에는, 진료시간에 관계 없이 구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전화로 구급차를 부른다. 전화번호는 「119 (소방서)」

◆참고 : 입원에 필요한 보증인•보증금

입원할 때에는 보증인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. 병원에 따라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, 대략 10 만엔 정도 이다. 의료비를 지불하고 난 후, 영수증과 교환하여 반환되므로, 보증금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하도록 하자.

●입원할 때 필요한 것

① 외국인등록증

② 건강보험증

③ 인감(가지고 있는 경우) ④속옷,잠옷

⑤ 수건•칫솔 등 세면도구 ⑥슬리퍼

⑦ 여성은 생리용품 등





9. 은행구좌의 개설

6개월 이상일 것

은행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지점 수가 많은 은행이나, 집에서 가까운 금융기관 등, 이용에 편리한 곳을 선택하자.

은행구좌 개설에 필요한 것은?

①외국인등록증명서 ②인감

◆주의:여권 만으로는 일본에서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좌를 개설할 수 없다. 대부분의 은행 (미즈호, 도쿄미츠비시 UFJ, 리소나, 미츠이스미토모 등) 에서는, 재류기간이 반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구좌를 개설할 수 없다. 급하다면 우체국에서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, 이때 인감이 반드시 필요하다.

●예금의 종류는?

W ST

인당의 예금에는 보통예금, 당좌예금, 정기예금 등이 있다. 입금, 출금, 공과금 납부, 자동인출, 급여이체 등을 일상적으로 ● 이용하는 경우에는 **보통예금**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.

●해외에 송금하기 위한 3가지 방법

★**전신송금**: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, 수수료가 가장 비싸다. (1건당 대략 3,000엔~5,000엔 정도)

★송금수표: 송금용 수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해외의 수취인에게 직접 우송하면, 수취인이 은행에서 송금용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는 방식.(송금에 2주 이상 소요. 수수료는 약 3,000엔 정도)

- ★보통송금:은행에서 서류수속을 하여 송금하면, 수취인이 은행에서 받는 방법. (송금에 1~2주 정도 소요. 수수료는 약 2,500 엔~4,000 엔 정도)
- ◆해외송금의 경우 수속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, 여유를 갖고 2~3시간 전에 가는 것이 좋다. 송금시에는 수취인의 은행 №.(SWIFT 코드),은행명(영문),은행주소 (영문),수취인의 이름과 주소(영문) •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알아 두도록 하자.

◆참고: 은행·우체국업무시간(종료시간은 점포에 따라 차이가 있음)

은행 <창구>평일 9:00~15:00 <ATM>평일•주말•휴일 8:00~22:00

우체국 <우편>평일 9:00~17:00 <예금>평일 9:00~16:00

<ATM> 평일·주말·휴일 8:00~21:00

*편의점의 ATM은 **24시간** 이용가능. 단 **수수료가 비싸다**.